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7년 04월 06일

동화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한**	한** 1956-02-18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나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04-06